

망마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

제1장 수영장 회원 및 강습

제1조(목적)

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망마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)

① 망마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)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(일반강습반, 어린이반, 실버반, 아쿠아로빅반), 자율연수반, 자유 월권 자유수영,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,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 강습반(초급·중급·고급·아쿠아로빅반)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
2. 자율연수반 : 여수시민으로서 해당 시간대 고급반을 수료하고 1개월 이상 강습을 마친 회원
3. 어린이반 :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
4. 실버반 :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
5. 자유수영반 :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

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온라인 강습신청)

- ① 온라인 강습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온라인 강습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가능하다.
- ③ 온라인 강습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,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(회원)에게 있다.

- ④ 온라인 강습신청을 완료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.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다. 단, 강습중인 회원은 강습신청이 불가하다.

제4조(회원등록)

-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하며,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미 등록 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.
- ③ 강습당첨자는 회원등록을 마쳐야 하며,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 용료 결제 및 이용수칙 서약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.
- ④ 월권 자유수영 회원등록은 상시 가능하다. 단, 동시간대 이용객 현황에 따라 즉시 이용이 아닌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.
- 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양도, 양수가 불가하며, 분실 시 즉시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한다.(재발급 수수료 2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)

제5조(강습)

- 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,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.
- ② 반별 강습시간(자유수영포함)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 50분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.
- 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.
- 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.
-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도중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.

제6조(이용료)

- ① 이용료는 「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.

제2장 반환 및 변경

제7조(이용료 반환)

-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.
 1. 재난,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
 2.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
 3. 프로그램 시작 후 이용료 반환 시 1개월 단위 결제금액의 10% 위약금과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반환
 4. 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 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
 5. 제 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.
 1. 위약금 공제 : 총 결제금액 × 10%
 2. 이용일수 공제 : (결제금액 / 이용가능기간) × 이용일수
 3. 제 2호의 이용가능기간은 1개월 결제분 기준 30일을 의미한다.
-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
- ④ 제 1항 제 3호의 경우 강습잔여일 15일 미만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2개월 이상 결제한 경우 강습잔여일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 한다.)
- ⑤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불한다.

제8조(연기)

- ① 회원은 3개월 단위마다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. 단, 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연기신청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
- ②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영장 운영시간)

-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:00부터 폐장은 20:20, 토요일은 09:00부터 17:30까지이다.
- 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,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.
 1.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2.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시
 3. 시설의 보수, 보강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

제 3장 시설이용 및 손해배상

제10조(이용자 준수사항)

시설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용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,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하여야 한다.
2.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,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.
3.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.
4.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.
5.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·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.
6.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,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
7.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(가족,선생님,인솔자)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
8.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.
9.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

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.

10.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.

제11조(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

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한다.

1.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
2.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풀, 샤워장, 탈의실,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
3.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

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1. 화장실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, 염색약을 바른 경우
2. 심신질환, 전염성질환,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
3.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,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
4. 본인 강습시간이 아닌, 타 강습시간에 들어간 경우(초급오전반→초급저녁반, 자유수영→초급새벽반 등등)
5.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단체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하는 자
6. 타인에게 특정 영법, 수모,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자
7.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자
8. 체육센터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자
9.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

제12조(개인사물함)

- ①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체육센터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체육센터 내 신청을 허가할 때 체육센터는 보증금(10,000원)을 예치시킨 후 개인사물함 열쇠를 교부한다.
- ③ 회원이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경우 즉시 이를 체육센터에 알려야 하며, 열쇠 교체 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
- ④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종료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체육센터에

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⑤ 체육센터는 제 3항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열쇠를 반환받은 경우 제 2항에 의거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육센터는 제2항에 의해 예치된 보증금을 공제하고,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)

- ①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,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. 단,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하다.
- ③ 개인사물함,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
- 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, 지병,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체육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.

제 4장 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

제14조(개방)

- ①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6:00부터 22:00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:00부터 18:00까지이다.
- 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휴장은 명절 연휴(설, 추석)로 한다.

③ 임시휴장은 제 8조 제 3항을 준용한다.

제 15조(시설이용 및 준수사항)

다목적체육관의 시설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체육관 시설 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전용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2.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3. 지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.
4.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5.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은 생활체육 무료교실 목적의 강습행위는 가능하다.

제5장 기 타

제16조(분실물)

락커룸, 샤워실 등 체육센터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,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제17조(고지)

체육센터는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기타)

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, 체육센터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제19조(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
- ②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
-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본 이용수칙은 2021. 4. 5. 부터 시행한다.